

## [별지 2]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

■「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」[별지 제2호서식]		
<b>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</b>		
신청인	업체명(상호명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이메일
신청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취득을 위해서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평가의 침투테스트 및 취약점 진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호의무, 비밀유지 및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		
상호의무	신청기관은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보안 인증 범위 내의 정보시스템 중 평가팀 에서취약점	

점검 및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고자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청기관은 평가팀에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청기관은 평가팀에서 취약점 점

검 및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 요한 환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가팀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범위 내의 정보시스템  
중 신청기관과 협의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한다.

가팀은 협의된 정보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취약

점 점검 및  
침투테스트  
를 수행하  
고자 할 경  
우 사전에  
신청기관과  
협의하여야  
한다.

가팀은 취약  
점 점검 및  
침투테스트  
를 수행하  
기 전에 수  
행기간 및  
대상, 수행  
IP주소 등  
을 문서화  
하여 신청  
기관에 제  
공하여야  
한다.

튜테스트의  
대상은 아  
래를 기본  
으로 하며  
신청기관의  
클라우드컴  
퓨팅서비스  
환경 구성  
에 따라 추

가 혹은 축  
소될 수 있  
다.

외부  
이용

가팀은 취약  
점 점검 및  
침투테스트  
를 수행하  
면서 발생  
가능한 소  
프트웨어,  
하드웨어에  
대한 영향  
또는 손상  
에 대해서  
신청기관에  
설명하여야  
한다.

가팀은 취약  
점 점검 및  
침투테스트  
를 수행하  
면서 신청  
기관의 소  
프트웨어,  
하드웨어에  
대한 이상  
동작 또는

손상을 최  
소화하도록  
노력하여야  
한다.

청기관은 취  
약점 점검  
및 침투테  
스트 기간  
동안 신청  
기관 내 정  
보시스템침  
입 및 이상  
알림에 대  
해서 예외  
처리, 통보  
등 대응 업  
무를 수행  
하여야 한  
다.

청기관은 취  
약점 점검  
및 침투테  
스트로 장  
애발생 시  
수행의 일  
시 중단을  
요청할 수  
있으며, 평  
가팀은 이  
에 즉시 협

조하여야  
한다. 단,  
신청기관은  
장애처리후  
침투테스트  
및 취약점  
진단 수행  
이 즉시 재  
개될 수 있  
도록 협조  
하여야 한  
다.

가팀은 취약  
점 점검 및  
침투테스트  
를 수행한  
후 결과에  
대해서 문  
서로 제공  
하며, 신청  
기관이 이  
에 대한 설  
명을 요청  
할 경우 설  
명하여야  
한다.

평가팀은  
취약점 점  
검 및 침투  
테스트를

수행한 후  
발견한 문  
제점에 대  
해서 신청  
기관에 보  
완조치를  
요청할 수  
있다.

청기관은 요  
청받은 문  
제점에 대  
해서 보완  
조치를 지  
체 없이 시  
행하여야  
한다.

청기관은 요  
청받은 문  
제점에 대  
해서 보완  
조치 방법  
을 평가팀  
을 통해 안  
내받을 수  
있으나, 최  
종적인 보  
완조치 방  
법의 결정  
은 신청기  
관이 하며

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다.

신청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고, 이에 대해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평가기관은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적절성을 확인하고, 필요 시 이 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.

평�팀은 보완조치 내역에 대해서 취약 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를 수행하

	<p>여보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신 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SaaS/Pa as 사업자 의 경우, 취약점 점 검 및 침투 테스트 등 의서에 대 해 IaaS 사업자의 동의를 득 하여야 한 다.</p>
비밀유지	<p>평가팀은 신청기관이 제공하거나, 취약점 점검 및 침 투테스트를 통해서얻은 아래의 기 밀정보에 대해서 외 부에 공개</p>

또는 누출  
되지 않도  
록 하여야  
하며, 내부  
에서도 최  
소한의 필  
요에 의해  
서 기밀정  
보가 취급  
되어야 한  
다.

- 1) 취약점  
점검 및 침  
투테스트를  
위해서 신  
청기관이  
제공한 정  
보
- 2) 신청기  
관이 기밀  
로 지정한  
정보
- 3) 취약점  
점검 및 침  
투테스트의  
결과
- 4) 일체의  
개인정보
- 5) 신청기  
관의 사업  
정보

6) 이에  
준하는 비  
밀수준의  
정보

평가팀은 타  
법령에 의  
해서 기밀  
정보의 제  
공을 명시  
적으로 요  
청받았을  
경우 외부  
에 제공할  
수 있으나,  
이 경우에  
도 반드시  
한국인터넷  
진흥원을  
통해서제공  
하여야한  
다. 한국인  
터넷진흥원  
은 외부에  
기밀정보를  
제공할 경  
우에도 기  
밀정보에  
대해서 최  
대한 비식  
별화 조치  
를 취하여

	제공하여야 한다.
책임제한	<p>평가기관은 취약점 점 검 및 침투 테스트로 인한 소프 트웨어, 하 드웨어에 대한 영향 또는 손상 에 대해서 책임을 지 지 않는다.</p> <p>취약점 점 검 및 침투 테스트의 수행은 신 청기관의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 에 대해서 현 시점 및 미래의 침 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 하지 않는 다.</p>
상기 사항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	

년 월 일	
신청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	비중
210mm×297mm[백상지(80g/m <sup>2</sup> )]	